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혜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2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김혜지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원태,
김재진, 김종길, 김태수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서상열, 신복자, 심미경,
옥재은, 유만희, 윤기섭,
윤종복, 이봉준, 이성배,
이종태, 이종환, 최민규,
허·훈, 황유정, 황철규
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한강교량 및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의 도로표지 관리 기관을 기존 도로사업소에서 한강교량 및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 관리기관인 재난안전실로 일원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한강교량과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에 부속된 도로표지의 관리기관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함.(안 별표 1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주요시설물 관리기관(제5조 관련)

구 분	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도로	서울 특별시도	○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	재난안전실장
		○ 차도관리(버스전용차로, 자전거전용도로·자전거전용차로 포함)	도로사업소장
		○ 도로시설물(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 제외)	
		○ 보도관리(촉구,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)	
자동차 전용도로		○ 차도 및 보도 관리(청소 포함)	재난안전실장
		○ 녹지 및 가로수	
		○ 도로시설물	재난안전실장
도로 부속물	공동구	○ 공동구	재난안전실장
	지하보도 및 보도육교	○ 서울특별시도(자동차전용도로 포함)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(생태통로 포함)	자치구청장
	가로등·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·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재난안전실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도로사업소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	자치구청장
	나머지 도로부속물 (방호울타리·중앙분리대·과속방지시설·미끄럼방지시설·충격흡수시설·낙석방지망·절개지·도로 옹벽·방음벽·맨홀 등)	○ 자동차전용도로(차도 및 보도)의 나머지 도로부속물	재난안전실장
		○ 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	
		○ 서울특별시도(차도)의 나머지 도로부속물(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)	도로사업소장
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(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 제외)			
교통관리시설	지능형 교통체계	○ 교통정보의 수집, 제어, 가공,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	교통실장
	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	○ 버스전용차로(중앙 및 가로변) 유·무인 단속시스템	교통실장
	도로표지	○ 문안검토	교통실장
	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	재난안전실장
○ 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의 도로표지			
교통안전시설	신호기·안전표지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(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 제외)	도로사업소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	자치구청장
		○ 지침운용,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	교통실장
	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	재난안전실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지	
		○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	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	도로사업소장
		○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	

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	시선유도표지·시선 유도봉·갈매기표지·도로반사경·차량 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, 교통섬 등	○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	자치구청장
		○ 지침운용,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	재난안전실장
	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	재난안전실장
		○ 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	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(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제외)	도로사업소장
○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(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·교통섬 제외,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)	자치구청장		
하천 시설	국가 및 지방 하천(한강 제외) ,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	○ 서울특별시도(보도)의 차량진입금지시설, 교통섬	자치구청장
		○ 한강의 제방, 호안, 수제, 보, 관측시설 등 ○ (육)갑문의 구조물,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○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 등 ○ (육)갑문의 문짝, 권양기 시설물, 통로청소, 수문개폐	미래한강본부장
하수도	공공하수 처리시설	○ 제방, 호안, 수제, 보, 관측시설 등 ○ 빗물펌프장(유수지 포함)의 구조물,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○ 호안블록, 옹벽, 도수로,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○ 수문의 구조물·문짝·권양기 등 관련 시설 ○ 갑문의 구조물·문짝·권양기·통로청소·수문개폐 등 ○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·진출로 시설 ○ 그 밖의 하천시설	자치구청장
	차집관거	○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	물재생센터소장 (위탁업체대표)
	하수관거	○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	물재생센터소장 (위탁업체대표)
복개 구조물	하천복개구조물	○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	자치구청장
		○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○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	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

비 고 :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

가. 청계천 제외지(堤外地)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(開口部) 수문 : 물순환안전국

나. 청계천로(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)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: 재난안전실장

다.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

라. <삭 제>

참고1) "차도"란 보·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.

참고2) 도로부속물의 "절개지"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.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관리 중인 한강교량 및 1종 시설물(교량·고가차도·입체교차)에 부속된 도로표지와 관련하여 조례상 관리기관을 내부변경(도로사업소장→재난안전실장)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이설화

☎ 02-2180-7952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